#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99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서지영·정연욱·김승수

이헌승 • 박성훈 • 박덕흠

인요한 • 서천호 • 권성동

김소희 · 김기현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,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을 붙여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'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'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 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 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 이 있었음(2010헌가2, 2011헌가29 등).

한편, 선거기간 중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9시부 터 오전 7시까지 녹음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.

이에 야간의 옥회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고,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것임(안 제10조). 법률 제 호

##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 본문 중 "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"을 "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"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"를 "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도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	제10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
시간) 누구든지 <u>해가 뜨기 전</u>	시간) <u>오후 9시부터</u>
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	다음날 오전 7시까지
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	
다. 다만, 집회의 성격상 부득	
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	
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	
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	
위한 조건을 붙여 <u>해가 뜨기</u>	<u>오후</u> 9시
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	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도
회를 허용할 수 있다.	